2024년도 제1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 1. 일 자 2024년 6월 13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신 성 환 위 원

장 용 성 위 원

황 건 일 위 원

김 종 화 위 원

이 수 형 위 원

- 4. 결석위원 유 상 대 위 원(부총재)
-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이 종 렬 부총재보

김 웅 부총재보 채 병 득 부총재보

권 민 수 부총재보 박 종 우 부총재보

이 재 원 경제연구원장 이 지 호 조사국장

장 정 수 금융안정국장 최 창 호 통화정책국장

이 한 녕 금융결제국장 윤 경 수 국제국장

오 금 화 외자운용원장 백 무 열 법규제도실장

최 용 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허 현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 <의안 제17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와 제64조에 따라 한국은행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추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6월 7일 개최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

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관련부서는 커버드본드의 경우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담보로 제공되는 기초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있어 은행채에 비해 신용도가 높은 데다, 정부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되는 만큼 한국은행의 대출 담보증권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였음. 아울러 이에 따른 담보범위의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부의 대책 등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이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음. 한편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커버드본드를 포함할 경우 당행 대출제도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담보 범위 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에도 커버드본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음.

이에 위원들은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만 일부 위원들은 커버드본드의 담보 편입에 따른 리스크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커버드본드를 담보로 인정할 경우 은행들은 여타 은행이 발행 한 채권을 당행 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은행간 상 호연계성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커버드본드에 대한 담보 인정비율을 설정할 때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설정시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커버드본드 자체의 신용도 및 유동성과 함께 은행간 연계성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당행의 적격담보 인정, 정부의 대책 등에 따른 커버드 본드 시장 활성화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향후 커버드본드 시장 동향 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자금 조달·운용 상황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생략)

# <의안 제18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10호와 제81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차액결제 이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증권에「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추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한 위원협의회 논의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앞서 관련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생략)